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
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우형찬 의원 외 10명

나. 의안번호 : 제1717호

다. 제출일자 : 2020. 8. 11.

라. 회부일자 : 2020. 8. 21.

2. 제안사유

- 최근 플랫폼 기반 택시산업 환경의 변화와 ICT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 차고지 밖 교대근무 등을 실증특례로 지정('20.7.27.) 관리하는 등 택시산업의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택시업체 노사간 갈등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택시 운영을 통해 택시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택시산업 제도변경을 고려하여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(안 제2조)
- 나. 포상금지급대상 중 “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”와 벌표 위반 행위 중 “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”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최소화 하고자 함 (안 제3조, 벌표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0.8.29.~2020.9.2.
 -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 : 원안가결¹⁾

-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포상금 전문 신고자들의 불충분한 증거자료와 무분별한 신고 및 그에 따른 소송 등으로 법인택시사업자들의 민원 발생이 지속되었음
- 신고포상금에 대한 조례규정을 폐지하더라도 사업개선명령에 ‘차고지 밖 관리(교대) 금지’ 처분 규정이 있어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함

1) 택시물류과-33787(2020.8.24.)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차고지 밖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당초 제정 및 개정 목적과는 달리 불충분한 증거자료와 포상금만을 노린 차고지 밖 위반행위 신고로 청문절차에 따른 택시업계의 어려움과 행정처분을 위한 서울시의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관련 법²⁾에 따라 택시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업개선명령으로 차고지 밖 교대를 금지하고 있고, 현행 조례는 포상금 지급대상³⁾과 지급기준⁴⁾에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를 규정하여 관련 규칙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⁵⁾하고 있음

2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3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·군수를 말한다)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.

9.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3) 「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」 제3조(포상금의 지급대상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한다)은 ~ (생략)~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·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. ~ (생략) ~

5.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: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

4) 「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」 제4조(포상금 지급기준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 한다. 다만,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- 현행 조례는 당초 2007년 시장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법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하였으나,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한 차례 심사보류 후 2008년에 수정 가결되어 시행되었고,

지입제 및 도급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례의 당초 제정 목적과는 달리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만이 집중적인 신고대상이 됨에 따라 2013년 신고포상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 관련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에 이르고 있음

-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별 연도별 포상금 지급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조례가 제정된 2009년 이후와 조례가 개정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신고건수 중 차고지 밖 관리운영 금지 신고(97.1%) 및 포상금 지급액(98.5%)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

당초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목적과는 달리 포상금 수급이 쉬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가 집중되고 있어 택시업계 내부의 자정

5) 「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 제9조(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) ① 조례 제3조제1항제5호, 제8호, 제10호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은 처분건별로 별표 2와 같다.

[별표2]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(제9조제1항 관련)

위반행위 항목	포상금 지급액(원)
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	200,000

노력을 독려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조례 운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할 것임

※ 참고 : 여객자동차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

(단위 : 건, 만원)

위 반 행위별	합 계		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		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		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		개인택시 부제 위반	
	건 수	지급액	건수	지급액	건수	지급액	건수	지급액	건수	지급액
2009	112	11,140	1	200	2	200	107	10,700	2	40
2010	37	3,140					30	3,000	7	140
2011	66	6,440					64	6,400	2	40
2012	38	2,760					25	2,500	13	260
2013	87	8,820					87	8,700		120
2014	373	30,420			1	100	372	30,320		
2015	182	9,900					182	9,900		
2016	47	1,020					46	1,000	1	20
2017	5	340					5	340		
2018	36	720					36	720		
2019	1	20					1	20		
2020	22	440					22	440		
합 계	1,006	75,160	1	200	3	300	977	74,040	25	620

- 또한, 차고지 밖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처분은 이미 폐지된 일명 “카파라치 제도”⁶⁾와 유사한 제도를 의견수렴 절차 없이 도입한 점, 도급제 및 지입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보다는 특정 항목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이 집중됨에 따라 소수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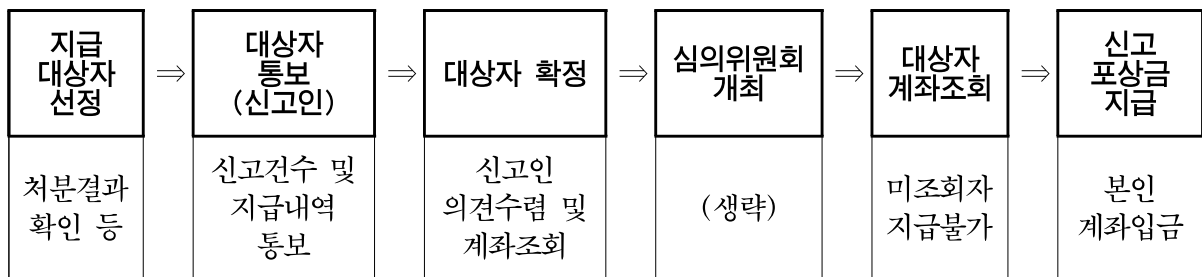
6) 도로교통 법칙신고 포상금제(카파라치)

- 시행근거 : 경찰청 지침 - 시행시기 : 2000년 - 폐지시기 : 2003년
- 폐지사유 ① 모든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제도상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회의 지적과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중단 ② 제도도입으로 인해 얻는 공익적인 이익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시행효과가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판단

신고자가 전체 신고건수와 포상금의 대부분을 차지⁷⁾하는 등 전문 신고자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점,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⁸⁾ 등으로 서울시의 행정력 낭비가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

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택시운송업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고, 반복적인 소송과 행정심판 등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임

※ 참고 : 신고포상금 지급절차⁹⁾



1. 지급조건(대상)이 확정된 신고건을 대상자로 확정
2. 2019년부터 신고건수가 적고 지급범위가 소규모로 민원해소 및 행정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 생략

7) 차고지 밖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(2010~2020년 현재)

구 분	인원수(명)	전 체 신고건수(건)	지급금액(천원)	비 고
전 체 신고자	140 (100.0%)	870 (100.0%)	633,400 (100.0%)	
전 문 신고자	24 (17%)	707 (81%)	497,800 (78.6%)	'14.1.9. 포상금액 조정(100만원→20만원)

8) 차고지 밖 위반행위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(2013~2020)

- 총188건(소송 74건, 행정심판 114건)

9) 2020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, 택시물류과-16190(2020.4.20.)